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05
----------	-------

발의연월일 : 2024. 3. 7.

발 의 자 : 강기윤 · 하영제 · 이종성
이현승 · 박대수 · 윤주경
김근태 · 정운천 · 서일준
김희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행위제한이 수반되는 결정으로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주무장관의 재량으로 맡겨져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창원시는 지방 중소도시권임에도 대도시권역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기계·조선사업의 쇠퇴 등으로 인해 인구집중 요인의 감소로 인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가 매우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토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며, 그 결과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의 감소나 도시 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전면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5년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4년 이상 지난 지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최초로 재검토하여야 하며, 최초로 재검토한 날부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생략) <u><신설></u>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의 감소나 도시집중요인 감소 등 도시의 확장가능성이 상실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전면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5년마다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u><신설></u>	

<u>②</u> (생략)	<u>야 한다.</u> <u>④</u> (현행 제2항과 같음)
---------------	---------------------------------------